

등록번호	회생지원부-116
등록일자	2016.05.18.
결재일자	2016.05.18.
공개구분	공개

결재	★차장	부장	이사장	
협조				

2016년 상반기 회생지원부문 간담회 결과보고

서울신용보증재단
회생지원부

■ 간담회 개요

- 현장 중심의 회생지원업무 현황 파악 및 인식 공유
- 회생지원업무 전반에 관한 애로·건의사항 청취, 개선으로 소통 강화
- 실시일 및 참석자
 - 4회 시행 (총29인 참석)

일 정	지역본부	참석자	비 고
5/2(월)	중부지역본부	회생지원팀장 외(5) / 회생지원부(2)	
5/4(수)	동부지역본부	회생지원팀장 외(5) / 회생지원부(2)	
5/9(월)	서부지역본부	회생지원팀장 외(4) / 회생지원부(2)	특수지원센터 포함
5/11(수)	남부지역본부	회생지원팀장 외(7) / 회생지원부(2)	

■ 간담회 주제별 주요내용

목표배정 관련 검토	
지점의견 및 건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생지원부문 목표 배정 시 기준이 되는 채권잔액에 당해년도 신규발생 대위변제 채권규모 반영 요망 - 회생지원부문 목표를 절대금액이나 건수가 아닌 '율'로 부여하는 방안 검토 요망 - 목표 배정 시 객관적 기준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지점환경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 임의조정 요망

<p>본부의견 및 향후계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발생채권 예상치 목표반영, 2차 조정 등은 과거 목표배정 시 적용한 사례 있으나 수용성 문제로 최근 제외된 요소이며, '올' 평가는 목표의 불확정에 대한 부담이 존재함 - 하반기 예정인 워크숍에서 관련 사항 재검토 및 기타 목표배정에 관한 의견 취합하여 차년도 반영 예정
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법무사 사건위임 상한제 관련 (검토)	
<p>지점의견 및 건의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무사 의뢰 대상 사건은 변호사 의뢰 대상 소송과 달리 긴급을 요하는 신청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한제 폐지 요망 - 기존 활용도 높은 법무사 위임한도 초과하여 상대적으로 활용도 낮은 법무사 사건의뢰 시 수임거절 현상 발생하는 바, 신속한 대책 수립 요망 - 법무사 평가 등을 기초로 위임 상한선 차등 설정 필요 - 신·기보 거래업체를 위주로 한 법무사 Pool 확대 필요 - 수임거절 법무사 계약 해지 후 신규 법무사 계약 체결 또는 기 법무사 간 쿼터 재배정 요망 - 지점별 또는 지역본부별 전담 법무사 할당 검토 요망 - 특수지원센터는 지점과 별도 상한제 적용방법 검토 - 타 기관, 은행 사례 참고하여 지점별로 법무사 개별 선정, 계약 재량권 부여

<p>본부의견 및 향후계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무사 사건위임 상한제는 업무 편중현상 해소라는 대외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방안인 바, 실무상 불편을 이유로 원천적인 폐지는 불가능한 상황임. - 기존 활용도 낮은 법무사에 대한 법무팀의 협조노력을 통해 결과 보고일 현재 상당수 법무사가 적극수행의지 표명하였고, 법무사별 내부 개선절차 착수하였음. - 제도시행 초반인 점 감안하여 상반기 중 제도 폐지, 신규계약은 불가하며, 본부에서는 한도조정, 협조요청 강화 등 실무 상 개선노력 강화 예정인 바, 영업점은 기존에 활용도 낮았던 법무사에 대한 의뢰 확대 및 초반 업무미숙에 대한 배려 요망
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본 · 지점간 소통 관련 개선	
<p>지점의견 및 건의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강운동, 채무감면 특별조치 실시계획 사전 공유 - 전산개발 및 업무화면 반영 시 사전 공지 및 안내 요망 - 본부정책 시행 전 지점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 절차 수행 요망 - 대외 기관평가 지표 협의 시 본부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지점의견 반영하여 협의 요망
<p>본부의견 및 향후계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간업무계획 공지 및 전산개발의 경우 시행문서로 개발 사실 통지 시행 중임 - 본부 정책적 판단 및 최종확정 전 선입견 배제를 위해 결과확정 전 사전 공유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나 가능한 지점에서 예측가능 하도록 노력하겠음. -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중 지점 운영에 핵심이 되는 사항은 가능한 사전 의견 수렴 하도록 노력하겠음.

희생지원보증 관련	
지점의견 및 건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 왜곡 방지를 위해, 특수지원센터에서 발굴하는 희생지원보증 건은 특수지원센터에서 직접 실행하거나, 원지점으로 이관되어 실행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개선 - 희생지원보증 목표 초과 달성 시 분할상환약정 실적으로 교차 인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선 유지 - 희생지원보증은 무등록 사업자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 유지
본부의견 및 향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희생지원보증 보증심사위원회 의결 시 본부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실행지점의 적합성 확인하고 있으며, 지속 위반 발생할 경우 '특수지원센터 희생지원보증 취급에 관한 처리기준' 시행예정 - 확정된 평가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며 기 달성 영업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현재 평가방법 유지 - 현행 '지역신용재단법' 및 '동법 시행령'에 의할 경우 무등록 사업자(개인)에 희생지원보증은 불가함.

분할상환 관련	
지점의견 및 건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분할상환금 기일관리' 화면에 기한이익부활업체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개선 - 일시상환도 분할상환 실적에 포함되도록 변경 유지 - 분할상환 기일관리 시 현실적으로 악성 민원업체의 경우 즉각적인 기한이익상실처리 어려운 상황 발생하는 바, 기일관리 정확도 목표를 하향 조정 유지

<p>본부의견 및 향후계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분할상환금 기일관리' 화면에서 기한이익 부활 업체는 분할상환금 납부대상 항목에 편입되어 관리대상으로 확인 가능 - 현재 부여된 분할상환약정 건수 목표는 대외평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인 바, 대내평가에 일시상환을 포함해도 목표 하향은 불가함. - 악성 민원업체의 경우 개별적인 대응의 어려움이 있겠으나, 분할상환 기일관리 정확도는 외부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설정된 목표인 점, 업체개별 사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수용 불가함.
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p>특수지원센터 관련</p>	
<p>지점의견 및 건의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지원센터 회생지원3팀 조직 설계시 반영하지 않았던 업무비중의 증가 및 실익재산 보유 업체에 대한 관리 정확도 향상을 위해 외부조정채권 이관시점 및 대상 조정 요망 검토 - 회생지원3팀 보유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 가상계좌로 계좌변경 신고 철저^{유)}
<p>본부의견 및 향후계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전금청구 서류 보완으로 인한 업무량 가중 및 외부 조정 폐지 목적의 초반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이관 시점 및 이관대상채권 범위 조정 검토 - 회생지원3팀에서 기존에 지점계좌로 신고한 개인회생 건에 대해 관할법원에 일괄로 변경신고 완료하였으나, 법원 실무상 반영이 지연 또는 누락되는 경우 발생함. 장기 미반영 건 및 신규신청 건에 대해 확인 요청

유) 유관부서 검토·협조 사항

기타 건의사항	
지점의견 및 건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점 1인당 최소 관리채권기준 설정하여 지점에서 과도한 채권 이탈 방지하도록 F등급 채권 이관 한도 설정 검토 요망 개선 - 추심노하우 등 업무지도 강화 개선 - 회수우수사례 공유 요망 개선 - 법무사 위임 상한제 대안으로 가압류 및 경매 등 신청사건 직접수행 방향 검토 요망 검토 - 상각서류 간소화(초본 생략 등) 요청 검토 - 사고유보품의 결재완료 후 내용수정 가능하도록 개선 유지 - 지점 업무량 분석에 기초하여 인력 증원 요청^{유)}
본부의견 및 향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지원센터 회생지원1팀 설립 취지 및 회수난망채권이 라는 F등급의 분류 기준 상 임의 이관한도 설정은 어려움. 단, 채권 등급분류 개선을 통해 F등급 현실화하여 이관 대상 규모 조정될 예정임. - '배당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', '가처분물건 경매진행 시 업무처리 지침' 등 수시 업무지도 시행중 - 회수우수사례 수집 및 자체 포상계획 계획 중이며, 영업점에서 상시 적극적인 지식활동 게시판 등록 요망 - 신청사건 직접수행은 향후 도입 검토 - 상각신청서류 간소화는 전년부터 중앙회에 지속 요청중임 금년 상각 시 추가 간소화 가능하도록 의견 제출 - 사고유보, 정상화 품의는 사고처리 품의와 달리 후속 다발성 품의내용 보완 기재 발생 가능성 없고, 전결권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임의수정 리스크 방지의 일환으로 현행방법 유지

유) 유관부서 검토·협조 사항

■ 유관부서 관련사항 정리

주요내용	관련부서
- 지점 업무량 분석 후 인력 증원 배치 검토 요망	인사팀
- 회생지원3팀 보유 개인회생 채권 중 지점계좌로 입금되는 건에 대해 지점요청 시 가상계좌 변경 신고 여부 재확인	특수지원센터 회생지원3팀

■ 기타사항

○ 예산사용 270천원(공통운영비)

- 회의 종료 후 점심식사
- 1인당 1만원 범위內. 끝.